

의안번호	제128호
의결연월일	2019. 9 .20.

\_\_\_\_\_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\_\_\_\_\_  
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9월 11일 논산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9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19년 9월 20일,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사회적경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절차 수정 (안 제11조)
- 상인회 등록의 취소 절차 규정(안 제22조의2)
-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규정(안 제28조의2)
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, 갱신 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(안 제33조의2)
-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(안 제3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